

# 남 해 군

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.

선 람	기 관 의 장



제 634호 2019. 5. 2.(목)

## 고 시

남해군 고시 제2019 - 51호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 .....	1
남해군 고시 제2019 - 54호 남해군관리계획(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도로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 .....	5
남해군 고시 제2019 - 56호 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남해군계획시설(공원, 도로) 실시계획 인가 고시 .....	13

## 공 고

제2019 - 566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.....	20
제2019 - 601호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공고 .....	22
제2019 - 602호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	24
제2019 - 603호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 .....	30
제2019 - 618호 공시송달 공고 .....	32

회 략									
-----	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남해군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편집 : 기획예산담당관(860-3045, 행정 3045)



고 시

남해군 고시 제2019 - 51호

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

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년 4월 23일

남 해 군 수

남해군 고시 제 2019-51호

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고시

제233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「지방자치법」 제133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9. 4. 23.

남 해 군 수

□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경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비 고
합 계	522,498,426	511,749,954	10,748,472	
일 반 회 계	426,864,857	413,397,376	13,467,481	
특 별 회 계	95,633,569	98,352,578	△2,719,009	
상수도특별회계	16,702,940	15,373,697	1,329,243	
청사건립특별회계	52,207,373	52,157,373	50,000	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954,914	883,478	71,436	
자활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	2,125,820	2,021,319	104,501	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675,587	666,728	8,859	
환경기초시설특별회계	22,966,935	27,249,983	△4,283,048	

□ 세입예산

○ 일반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분	경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	비고
<b>합계</b>	<b>426,864,857</b>	<b>413,397,376</b>	<b>13,467,481</b>	
지방세수입	14,405,300	14,405,300	-	
지방세	14,405,300	14,405,300	-	
세외수입	10,926,489	10,864,515	61,974	
경상적세외수입	6,197,648	6,186,173	11,475	
임시적세외수입	4,728,841	4,678,342	50,499	
지방교부세	181,624,000	168,280,000	13,344,000	
조정교부금등	14,360,000	14,360,000	-	
보조금	154,041,989	157,262,076	△3,220,087	
국고보조금등	125,525,742	128,445,990	△2,920,248	
도비보조금등	28,516,247	28,816,086	△299,839	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51,507,079	48,225,485	3,281,594	
보전수입등	50,088,742	46,807,148	3,281,594	
내부거래	1,418,337	1,418,337	-	

○ 특별회계

(단위 : 천원)

구분	경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감	비고
<b>합계</b>	<b>95,633,569</b>	<b>98,352,578</b>	<b>△2,719,009</b>	
지방세			-	
세외수입	4,143,153	4,046,083	97,070	
경상적세외수입	4,015,083	3,915,083	100,000	
임시적세외수입	128,070	131,000	△2,930	
지방교부세			-	
보조금	14,207,467	14,728,979	△521,512	
국고보조금등	12,567,759	12,971,800	△404,041	
도비보조금등	1,639,708	1,757,179	△117,471	
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	77,282,949	79,577,516	△2,294,567	
보전수입등	3,879,540	3,467,246	412,294	
내부거래	73,403,409	76,110,270	△2,706,861	

# 남 해 군 공 보

(4) 제 634 호

2019년 5월 3일

**세출예산**

**일반회계(성질별)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경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비고
<b>합 계</b>	<b>426,864,857</b>	<b>413,397,376</b>	<b>13,467,481</b>	
인 건 비	56,798,866	56,556,213	242,653	
물 건 비	27,140,050	26,715,789	424,261	
경 상 이 전	129,113,470	126,695,075	2,418,395	
자 본 지 출	165,038,007	149,353,015	15,684,992	
용 자 및 출 자			-	
보 전 재 원			-	
내 부 거 래	33,156,618	35,863,479	△2,706,861	
예 비 비 및 기 타	15,617,846	18,213,805	△2,595,959	

**특별회계(성질별)**

(단위 : 천원)

구 분	경정예산액	기정예산액	증 감	비고
<b>합 계</b>	<b>95,633,569</b>	<b>98,352,578</b>	<b>△2,719,009</b>	
인 건 비	3,411,207	3,420,050	△8,843	
물 건 비	5,631,407	5,732,827	△101,420	
경 상 이 전	4,823,912	6,991,981	△2,168,069	
자 본 지 출	27,137,306	27,749,100	△611,794	
용 자 및 출 자			-	
보 전 재 원	1,137,476	1,030,694	106,782	
내 부 거 래	53,352,926	53,402,926	△50,000	
예 비 비 및 기 타	139,335	25,000	114,335	

남해군 고시 제2019 - 54호

### 남해군관리계획(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

남해군관리계획(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도로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라 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하고 고시합니다.

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5월 2일

남 해 군 수

- 1. 위 치: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
- 2. 규 모: 지구단위계획구역 - 39,388㎡  
도로(중로3-10호선) - B=12m, L=556.5m, A=10,472㎡
- 3. 남해군관리계획(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: 붙임 참조
- 4. 관계도면: 실음생략

<붙임>

### 남해군관리계획(대지포온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, 도로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 조서

1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(변경 없음)

2. 용도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가. 개발진흥지구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도면표시번호	지구명	지구의세분	위 치	제한내용	면적(m <sup>2</sup> )	최 초 결정일	비고
신설	15	대지포온천 개발진흥지구	관광·휴양	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	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	39,388	-	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지구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5	대지포온천 개발진흥지구	신설 (A = 39,388m <sup>2</sup> )	○ 지난 200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제 2005-328호로 지정된 대지포 온천원보호지구 내 「온천법」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회 관광·휴양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하고자 함

3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가.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조서

도면표시번호	구역명	구역의세분	위 치	면적(m <sup>2</sup> 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18	대지포온천 지구단위계획구역	관광 휴양형	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	-	39,388	39,388	-	신설

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구역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8	대지포온천 지구단위 계획구역	신설 (A = 39,388㎡)	○ 지난 200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제 2005-328호로 지정된 대지포 온천원보호지구내 「온천법」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회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함

4.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1) 공간시설

구분	도면표시번호	시설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적(㎡)			최 초 결정일	비고
					기 정	변 경	변경후		
신설	1	녹지	경관녹지	삼동면 물건리 산241-7번지 일원	-	944	944	-	
신설	2	녹지	경관녹지	삼동면 물건리 845-4번지 일원	-	3,618	3,618	-	
신설	3	녹지	경관녹지	삼동면 물건리 산241-26번지 일원	-	644	644	-	
신설	4	녹지	경관녹지	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	-	1,734	1,734	-	
신설	5	녹지	경관녹지	삼동면 물건리 845-1번지 일원	-	281	281	-	

■ 변경 사유서

도면표시번호	시설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1	녹지	신설 (A=944㎡)	○ 온천개발에 따른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부에 경관녹지를 계획하였음
2	녹지	신설 (A=3,618㎡)	
3	녹지	신설 (A=644㎡)	
4	녹지	신설 (A=1,734㎡)	
5	녹지	신설 (A=281㎡)	

남 해 군 공 보

(8) 제 634 호

2019년 5월 3일

나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

1) 관광휴양시설용지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	비고			
			획지번호	위치	면적(㎡)				
-	I	23,918	I-1	삼동면 물건리 산241-11번지 일원	5,020	숙박시설			
			I-2	삼동면 물건리 845-4번지 일원	5,405				
			I-3	삼동면 물건리 산241-26번지 일원	5,936				
			I-4	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	4,525				
						I-5	삼동면 물건리 857-1번지 일원	1,421	SPA
						I-6	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	420	상가 및 카페
						I-7	삼동면 물건리 산241-10번지 일원	423	
						I-8	삼동면 물건리 산241-1번지 일원	768	판매 및 관리

2) 공공시설용지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	비고
			획지번호	위치	면적(㎡)	
-	II	3,250	II-1	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	2,621	도로
			II-2	삼동면 물건리 843-2번지 일원	629	환경오염 방지시설

3) 녹지용지

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지			비고
			획지번호	위치	면적(㎡)	
-	III	12,220	III-1	삼동면 물건리 산241번지 일원	4,295	공원
			III-2	삼동면 물건리 산241-3번지 일원	704	
			III-3	삼동면 물건리 산241-7번지 일원	944	경관녹지
			III-4	삼동면 물건리 845-4번지 일원	3,618	
			III-5	삼동면 물건리 산241-26번지 일원	644	
			III-6	삼동면 물건리 848번지 일원	1,734	
			III-7	삼동면 물건리 846번지 일원	281	

다. 건축물에 대한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 
 1) 관광휴양시설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
-	I-1 ~ 3	용 도	지정용도	○ 「관광진흥법」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
			권장용도	○ 휴양콘도미니엄
	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외의 용도
			건폐율	○ 30% 이하
			용적률	○ 160% 이하
			높 이	○ 5층 이하
			배 치	○ 도면참조
-	I-4	용 도	지정용도	○ 「관광진흥법」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숙박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5호 숙박시설
			권장용도	○ 휴양콘도미니엄
	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외의 용도
			건폐율	○ 30% 이하
			용적률	○ 160% 이하
			높 이	○ 7층 이하
			배 치	○ 도면참조
-	I-5	용 도	지정용도	○ 「관광진흥법」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휴양·문화시설 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16호 위락시설
			권장용도	○ 스파 및 사우나시설
	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외의 용도
			건폐율	○ 30% 이하
			용적률	○ 160% 이하
			높 이	○ 4층 이하
			배 치	○ 도면참조
-	I-6, 7	용 도	지정용도	○ 「관광진흥법」 시행규칙 별표19에 따른 상가시설지구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 ○ 「건축법」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,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, 제7호 판매시설

# 남 해 군 공 보

(10) 제 634 호

2019년 5월 3일

-			권장용도	○ 상가 및 카페	
	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외의 용도	
			건폐율	○ 30% 이하	
				용적률	○ 160% 이하
				높 이	○ 3층 이하
				배 치	○ 도면참조
			I-8	용도	지정용도
			권장용도	○ 판매 및 관리시설	
	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외의 용도	
			건폐율	○ 30% 이하	
			용적률	○ 160% 이하	
			높 이	○ 5층 이하	
			배 치	○ 도면참조	

2) 공공시설용지

도면번호	위 치	구 분	계획내용		
-	II-1	용도	지정용도	○ 도로	
			권장용도	-	
	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외의 용도	
				건폐율	-
				용적률	-
				높 이	-
				배 치	○ 도면참조
-	II-2	용도	지정용도	○ 저류지	
			권장용도	-	
	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외의 용도	
				건폐율	-
				용적률	-
				높 이	-
				배 치	○ 도면참조

3) 녹지용지

도면 번호	위 치	구 분		계획내용
-	Ⅲ-1, 2	용 도	지정용도	○ 공원(오수처리시설, 저류지 지하매설)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외의 용도
			건폐율	-
			용적률	-
			높 이	-
			배 치	○ 도면참조
-	Ⅲ-3 ~ 7	용 도	지정용도	○ 경관녹지
			권장용도	-
			불허용도	○ 지정용도 외의 용도
			건폐율	-
			용적률	-
			높 이	-
			배 치	○ 도면참조

5. 군계획시설 결정(변경)조서

가. 교통시설(도로) 결정(변경)조서

구분	규모				기능	연장 (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 요 경과지	최 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 (m)								
신설	중로	3	10	12	국지 도로	556.5	삼동면 물건리 900-3 일원	삼동면 물건리 1080 일원	일반 도로	-		

■ 변경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내용	변경사유
-	중로3-10호선	○ 신설 - B = 12m - L = 556.5m - A = 10,472m <sup>2</sup>	○ 지난 2005년 11월 14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5-328호로 지정된 대지포 온천원보호지구내 「온천법」 제10조에 따라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고, 같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금회 진입도로를 군계획시설 도로로 결정하고자 함

남해군 고시 제2019 - 56호

**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남해군계획시설(공원, 도로)  
실시계획 인가 고시**

남해 힐링빌리지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 관계도서는 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
2019년 5월 2일

남 해 군 수

# 남 해 군 공 보

(14) 제 634 호

2019년 5월 3일

1. 사업의 위치

- 경상남도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641번지 일원

2. 사업의 종류 및 명칭

- 종 류 : 군계획시설(교통시설:도로, 공간시설:공원)
- 명 칭 : 남해힐링빌리지 조성사업

3. 사업의 면적 및 규모

- 면 적
  - 교통시설(도로) 5,994㎡
  - 공간시설(공원:소공원) 301㎡
- 규 모

구 분	합 계	교통시설(도로)				공간시설(공원)
		중로 2-6	소로 2-127	소로 2-128	소로 3-49	소공원
면 적(㎡)	<b>6,295.0</b>	<b>2,376.0</b>	<b>1,258.0</b>	<b>2,179.0</b>	<b>181.0</b>	<b>301.0</b>

※ 우선 시행분

4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- 성 명 : 남해군수(담당부서:관광진흥담당관실)
- 주 소 : 경상남도 남해군 망운로9번길 12

5. 사업기간

- 착공예정일 : 실시계획 인가일
- 준공예정일 : 2020년 12월 31일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: 붙임1 참조

7. 관계도면 : 실음생략 **【남해군청 도시건축과(☎055-860-3414)에 비치】**



[붙임1]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·지반지목·면적 및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

1. 토지조서(총괄)

가. 전체 토지 편입조서

구 분	합 계		국 유 지		공 유 지		사 유 지		비 고
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
합계	28	6,295.0	-	-	27	6,260.0	1	35.0	
임	2	164.0	-	-	2	164.0	-	-	
도	6	363.0	-	-	5	328.0	1	35.0	
전	20	5,768.0	-	-	20	5,768.0	-	-	

나. 도시계획시설별 토지 편입조서

■교통시설 : 도로

구 분	합 계		국 유 지		공 유 지		사 유 지		비 고
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
합계	28	5,994.0	-	-	27	5,959.0	1	35.0	
임	2	164.0	-	-	2	164.0	-	-	
도	6	363.0	-	-	5	328.0	1	35.0	
전	20	5,647.0	-	-	20	5,467.0	-	-	

■공간시설 : 공원(소공원)

구 분	합 계		국 유 지		공 유 지		사 유 지		비 고
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필 지 수	면 적(m <sup>2</sup> )	
합계	1	301.0	-	-	1	301.0	-	-	
임	-	-	-	-	-	-	-	-	-
도	-	-	-	-	-	-	-	-	-
전	1	301.0	-	-	1	301.0	-	-	

2. 지목별 토지조서

가. 전체 지목별 편입조서

구 분	필지 수(개소)	편입면적(m <sup>2</sup> )	구성비(%)	비 고
합계	28	6,295.0	100.00	
임	2	164.0	2.60	
도	6	363.0	5.77	
전	20	5,768.0	91.63	

나. 도시계획시설별 토지 편입조서

■교통시설 : 도로

구 분	필지 수(개소)	편입면적(m <sup>2</sup> )	구성비(%)	비 고
합계	28	5,994.0	100.00	
임	2	164.0	2.73	
도	6	363.0	6.06	
전	20	5,467.0	91.21	

■공간시설 : 공원(소공원)

구 분	필지 수(개소)	편입면적(m <sup>2</sup> )	구성비(%)	비 고
합계	1	301.0	100.00	
임	-	-	-	
도	-	-	-	
전	1	301.0	100.00	

3. 소유자별 토지조서

가. 전체 토지 편입조서

구 분	필지 수(개소)	편입면적(m <sup>2</sup> )	구성비(%)	비 고
합계	28	6,295.0	100.00	
국유지	-	-	-	-
공유지	27	6,260.0	99.40	남해군
사유지	1	35.0	0.60	김다줄

나. 도시계획시설별 토지 편입조서

■교통시설 : 도로

구 분	필지 수(개소)	편입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계	28	6,260.0	100.00	
국유지	-	-	-	-
공유지	27	6,225.0	99.40	남해군
사유지	1	35.0	0.60	김다줄

■공간시설 : 공원(소공원)

구 분	필지 수(개소)	편입면적(㎡)	구성비(%)	비 고
합계	1	6,260.0	100.00	
국유지	-	-	-	-
공유지	1	301.0	100.00	남해군
사유지	-	-	-	-

## 4. 세부토지조서

구분	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지적면적(㎡)	편입면적(㎡)	소유자	비 고
교통 시설 (도로)	1	창선면 진동리	산204-1	임	439	132	공유지	남해군
	2	창선면 진동리	668	임	876	32	공유지	남해군
	소계				-	164	-	-
	1	창선면 진동리	641-1	도	175	35	사유지	김다줄
	2	창선면 진동리	641-3	도	106	92	공유지	남해군
	3	창선면 진동리	644-1	도	3	3	공유지	남해군
	4	창선면 진동리	645-1	도	20	20	공유지	남해군
	5	창선면 진동리	647-3	도	1312	174	공유지	남해군
	6	창선면 진동리	산204-8	도	57	39	공유지	남해군
	소계				-	363	-	-
	1	창선면 진동리	640	전	1177	71	공유지	남해군
	2	창선면 진동리	641	전	2301	1011	공유지	남해군
	3	창선면 진동리	642	전	2334	547	공유지	남해군
	4	창선면 진동리	644	전	870	151	공유지	남해군
	5	창선면 진동리	645	전	344	344	공유지	남해군
	6	창선면 진동리	651	전	909	6	공유지	남해군
	7	창선면 진동리	652	전	1779	255	공유지	남해군
	8	창선면 진동리	653	전	1633	479	공유지	남해군
	9	창선면 진동리	657	전	813	232	공유지	남해군
	10	창선면 진동리	658	전	1825	263	공유지	남해군
11	창선면 진동리	661	전	621	170	공유지	남해군	
12	창선면 진동리	663	전	621	28	공유지	남해군	
13	창선면 진동리	664	전	1950	295	공유지	남해군	
14	창선면 진동리	665	전	783	403	공유지	남해군	
15	창선면 진동리	666	전	1521	291	공유지	남해군	
16	창선면 진동리	667	전	1937	618	공유지	남해군	
17	창선면 진동리	669	전	1745	163	공유지	남해군	
18	창선면 진동리	673	전	852	100	공유지	남해군	
19	창선면 진동리	674	전	466	26	공유지	남해군	
20	창선면 진동리	661-1	전	57	14	공유지	남해군	
소계				-	5,467	-	-	
교통시설(도로) 편입 토지 소계				-	5,994	-	-	
공간시설 (공원)	1	창선면 진동리	653	전	1,633	301	공유지	남해군
	공간시설(공원) 편입토지 소계				-	301	-	-
				-	6,295	-	-	

5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·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서

번호	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(㎡)		소유자		관계인		
				지적면적	편입면적	주소	성명	주소	성명	소유권 외권리
1	창선면 진동리	산204-1	임	439	132		남해군		남해군	
2	창선면 진동리	668	임	876	32		남해군		남해군	
3	창선면 진동리	641-1	도	175	35		김다줄		김다줄	
4	창선면 진동리	641-3	도	106	92		남해군		남해군	
5	창선면 진동리	644-1	도	3	3		남해군		남해군	
6	창선면 진동리	645-1	도	20	20		남해군		남해군	
5	창선면 진동리	647-3	도	1312	174		남해군		남해군	
7	창선면 진동리	산204-8	도	57	39		남해군		남해군	
8	창선면 진동리	640	전	1177	71		남해군		남해군	
9	창선면 진동리	641	전	2301	1011		남해군		남해군	
10	창선면 진동리	642	전	2334	547		남해군		남해군	
11	창선면 진동리	644	전	870	151		남해군		남해군	
12	창선면 진동리	645	전	344	344		남해군		남해군	
13	창선면 진동리	651	전	909	6		남해군		남해군	
14	창선면 진동리	652	전	1779	255		남해군		남해군	
15	창선면 진동리	653	전	1633	780		남해군		남해군	
16	창선면 진동리	657	전	813	232		남해군		남해군	
17	창선면 진동리	658	전	1825	263		남해군		남해군	
18	창선면 진동리	661	전	621	170		남해군		남해군	
19	창선면 진동리	663	전	621	28		남해군		남해군	
20	창선면 진동리	664	전	1950	295		남해군		남해군	
21	창선면 진동리	665	전	783	403		남해군		남해군	
22	창선면 진동리	666	전	1521	291		남해군		남해군	
23	창선면 진동리	667	전	1937	618		남해군		남해군	
24	창선면 진동리	669	전	1745	163		남해군		남해군	
25	창선면 진동리	673	전	852	100		남해군		남해군	
26	창선면 진동리	674	전	466	26		남해군		남해군	
27	창선면 진동리	661-1	전	57	14		남해군		남해군	
<b>합 계</b>				-	6,295	-				

공 고

남해군 공고 제2019 -566호

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

『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,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17일

남 해 군 수

- 1. 출입토지의 내용
  - 공 사 명 :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
  - 출입구간 :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0번지외 21필지
- 2. 출입기간 : 2019. 4. 17.~ 사업 종료시까지
- 3. 사업시행자 : 남해군수(안전총괄과장)
- 4.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(☎055-860-3292~5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편입용지조서 1부. 끝.

용 지 편 입 조 서

번호	토 지 소 재 지		지 분	번 지	지 목		지 적 (m <sup>2</sup> )	소 유 자		비 고
	면	리			대 장	현 재		주 소	성 명	
1	남해	상주	양아	산269		임	3,471	389	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552 백양그린아파트206-1008	이상0
2	"	"	"	산270		임	3,471	634	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26	김도0 외 2인
3	"	"	"	1276		전	893	345	경남 남해군 이동면 석평리 489	정영0
4	"	"	"	1277	1	전	840	199	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525번길 73-3	정동0
5	"	"	"	1272		전	225	52	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444	정근0
6	"	"	"	산267	2	임	2,661	630	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2길 51-17	강효0
7	"	"	"	산267	3	임	798	176	부산 영도구 신신동3가 104-31	정신0
8	"	"	"	산271		임	3,967	1,624	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26	정대0
9	"	"	"	1269		전	215	215	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525번길 73-7	정시0
10	"	"	"	1978		도	638	267		국(국토교통부)
11	"	"	"	1266		전	122	14	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323	정달0
12	"	"	"	1264		전	1,540	177	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525번길 73-7	정시0
13	"	"	"	산272		임	14,678	235	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317	정차0
14	"	"	"	1256		전	1,101	805	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317	정차0
15	"	"	"	1255		임	109	52		정성0
16	"	"	"	1257		전	1,157	574		정성0
17	"	"	"	1261		전	1,134	130	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970-1 남양아파트 가-501	정용0
18	"	"	"	1263		전	737	248	부산광역시 서구 보수대로 41-15(토성동1가)	정용0
19	"	"	"	산266	1	임	9,684	2,264	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525번길 73-7	정시0
20	"	"	"	산265	5	임	7,306	1,205	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65 주공아파트 105동502호	김정0
21	"	"	"	산265	6	임	12,297	2,858	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362번길 177	신순0
22	"	"	"	산265	1	임	17,785	154	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2길 20, 108동 1103호(원호정보타운)	이규0 외 1인
계							84,829	13,247		

남해군 공고 제2019 - 601호

**『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』 사업인정에  
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공고**

「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」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,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 등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4월 30일

남 해 군 수



## 1. 사업의 개요

- 사업기간(예정) : 2019. 1. 1. ~ 2021. 12. 31.

사업의 종류 및 명칭(사업명)	사업예정지 (위치)	사업내용	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
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	남해읍 아산리 산144-5번지 일원	.사면정비 L=262m, H=20m	남해군청/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
## 2. 열람장소, 열람기간

- 열람장소 :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
- 열람기간 : 2019. 4. 30.~2019. 5. 15.

## 3.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

- 제출기간 : 2019. 4. 30.~2019. 5. 15.
- 제출방법 : 열람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따라 의견서 제출

※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방재복구팀(☎055-860-3293, 055-860-329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공고 제2019-602호

**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 
입법예고**

「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9년 4월 25일

**남 해 군 수**

1. 자치법규명 :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
2. 개정이유  
생활문화센터의 사용기준시간을 기존 3시간에서 1시간으로 개정하고 사용료 일부를 감면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용료 부담을 경감코자 함

3. 주요내용

- [별표 1]의 사용 기준 시간을 3시간에서 1시간으로 변경하고 사용료 일부 경감  
가. 개정 전

(단위 : 원)

구분 시설명	사용기준	사용료	비 고	
다목적실	오전	20,000	1. 사용기준시간 ○ 오전 : 10:00 ~ 13:00(3시간) ○ 오후 : 14:00 ~ 17:00(3시간) ○ 야간 : 18:00 ~ 21:00(3시간)	
	오후	20,000		
	야간	30,000		
동호회실, 전시실, 악기연습실	오전	3,000		2. 가산요율 ○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50% 가산 ○ 냉·난방사용 시 50% 가산
	오후	3,000		
	야간	5,000		
			3. 사용료는 부가가치세(10%) 미포함 금액임	

나. 개정 후

(단위 : 원)

구분 시설명	사용기준	사용료 (1시간)	비 고	
다목적실	주간	7,000	1. 사용기준시간 ○ 주간 : 09:00 ~ 18:00 ○ 야간 : 18:00 ~ 21:00	
	야간	10,000		
동호회실, 악기연습실	주간	1,000		2. 가산요율 ○ 냉·난방사용 시 50% 가산
	야간	1,500		
전시실	1일	무료	3. 사용료는 부가가치세(10%) 미포함 금액임	

4. 의견제출

가. 의견제출기간 : 2019년 5월 16일까지

-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5월 16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(문화청소년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1)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(찬·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)
- 2)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처

1). 주 소 : ☎52425,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

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

2). 연락처 : 전화 055-860-8626, 팩스 055-860-3750

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홈페이지, 직접 방문 등

5. 기 타

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문화청소년과 문화예술팀(전화 055-860-862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남해군 조례 제 호

## 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남해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생활문화센터 사용료(제8조 관련)

1. 사용료(다목적실, 동호회실, 전시실, 악기연습실)

(단위 : 원)

구분 시설명	사용기준	사용료 (1시간)	비 고
다목적실	주간	7,000	1. 사용기준시간 ○ 주간 : 09:00 ~ 18:00 ○ 야간 : 18:00 ~ 21:00  2. 가산요율 ○ 냉·난방사용 시 50% 가산  3. 사용료는 부가가치세(10%) 미포함 금액임
	야간	10,000	
동호회실, 악기연습실	주간	1,000	
	야간	1,500	
전시실	1일	무료	

2. 사용료 반환(다목적실, 동호회실, 전시실, 악기연습실)

반 환 기 준		
운영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	1.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	전액 반환
사용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	1. 사용일 1일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	전액 반환
	2. 사용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	반환하지 아니함

[참고-개정 전]

[별표 1]

### 생활문화센터 사용료(제8조 관련)

1. 사용료(다목적실, 동호회실, 전시실, 악기연습실)

(단위 : 원)

구분 시설명	사용기준	사용료	비 고
다목적실	오전	20,000	1. 사용기준시간 ○ 오전 : 10:00 ~ 13:00(3시간) ○ 오후 : 14:00 ~ 17:00(3시간) ○ 야간 : 18:00 ~ 21:00(3시간)
	오후	20,000	
	야간	30,000	
동호회실, 전시실, 악기연습실	오전	3,000	2. 가산요율 ○ 기준시간 초과 시 매시간 50% 가산 ○ 냉·난방사용 시 50% 가산  3. 사용료는 부가가치세(10%) 미포함 금액임
	오후	3,000	
	야간	5,000	

2. 사용료 반환(다목적실, 동호회실, 전시실, 악기연습실)

반 환 기 준		
운영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	1.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2. 천재지변,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되지 못하였을 경우	전액 반환
사용자의 책임있는 귀책사유	1. 사용일 1일전 취소신청을 한 경우	전액 반환
	2. 사용일 당일 취소신청을 한 경우	반환하지 않음

남해군 공고 제 2019 - 603호

## 공익사업 준비를 위한 토지 출입 공고

『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』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조(사업준비를 위한 출입의 허가 등), 제10조(출입의 통지)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9년 4월 30일

남 해 군 수

1. 출입토지의 내용

- 공 사 명 : 아산5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
- 출입구간 :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산144-5번지 외 17필지

2. 출입기간 : 2019. 4. 30.~ 사업 종료시까지

3. 사업시행자 : 남해군수(안전총괄과장)

4. 공사계획의 내용 및 출입토지조서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남해군 안전총괄과 (☎055-860-3293, 055-860-329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: 편입용지조서 1부. 끝.





남해군 공고 제 2019 - 618호

### 공시송달 공고

「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」 시행에 따른 사업인정과 관련하여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등기우편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, 이사불명, 폐문부재 등으로 협의가 불가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 제4항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,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사업인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4월 30일

남 해 군 수

1. 사업개요

- 1) 사업 명칭 : 소량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
- 2) 사업 목적 : 붕괴위험지역 지정 관리 및 정비를 통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- 3)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  - 가. 성 명 : 경상남도 남해군수
  - 나. 주 소 : 경상남도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9번길 12(서변리 24-1)
- 4) 사업 시행 위치 및 규모
  - 가. 위 치 :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산270번지 일원
  - 나. 사업내용 : 사면정비 L=728m

2. 의견 제출 기간 및 장소

- 1) 의견 제출기간 : 2019. 4. 30. ~ 5. 14. (14일간)
- 2) 의견 제출 장소 : 남해군청 안전총괄과 복구지원팀 (☎ 055-860-3293,4)

3. 공시송달 대상자

번호	토지소재지	지번	지목	면적 (㎡)	소유자 현황				비고
					소유자		관계인		
					지적	주소	성명	주소	
계						4인			
1	상주면 양아리	산267-2	임	2,661	경남 사천시 정동면 동계2길 51-17	강효0			
2	상주면 양아리	산265-1	임	17,785	경북 구미시 고아읍 문장로22길 20, 108동 1103호 원호정보타운	이규0			
3	상주면 양아리	1272	전	225	부산 서구 서대신동2가 444	정균0			
4	상주면 양아리	산270	임	3,471	경남 남해군 상주면 양아로 533번길 46	손홍0(김세0)			